

윤리위원회규정

제정 1965. 10. 23	개정 1991. 1. 1
개정 1973. 3. 23	개정 1995. 9. 19
개정 1976. 3. 26	개정 1999. 9. 14
개정 1976. 11. 2	개정 2001. 3. 29
개정 1977. 8. 30	개정 2004. 2. 26
개정 1977. 10. 31	개정 2014. 2. 27
개정 1978. 10. 31	개정 2022. 9. 21
개정 1981. 10. 29	(총회승인 2022.2.24)
개정 1983. 10. 28	개정 2025. 7. 30
개정 1984. 10. 28	(총회승인 2025.2.26)
개정 1988. 1.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31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윤리위원회 및 건축사회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징계절차, 징계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구성 등) ① 협회에 중앙윤리위원회를 두고 시·도 건축사회에는 건축사회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법률전문가 등 법률적 소양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건축사회 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3분의1 이상 법률전문가 등 법률적 소양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④ 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6조 제2항에 의한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의 임기에 따른다.

제3조(직무) 윤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2. 건축사 및 건축사업계의 자정(自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회원 윤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직무수행 원칙 등) ① 윤리위원회는 그 직무의 수행에 있어서 독립성을 가지며, 건축사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공정성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여

야 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윤리위반 혐의 제보자 등의 신분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제보자 등이 그 제보 사실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③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양심과 신의로서 사건을 공명정대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④ 이 규정에 의하여 윤리업무에 관계하는 위원 및 직원 등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윤리업무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위원의 해촉 및 자격상실) ①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위원 자격이 상실된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자격등록 취소 또는 자격 취소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그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3. 회원 권리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외부전문가 위원이 소속 단체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징계처분된 경우
 5. 위원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야기하였거나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부전문가 위원에 대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서 인사발령 등을 사유로 위원의 교체를 요청한 경우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6조(산하 위원회 등) ① 윤리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 윤리위원회 산하에 건축 불공정 신고센터와 조사위원회를 두고, 건축사회 윤리위원회 산하에 건축사회 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건축사회 윤리위원회가 조사위원회 기능을 겸할 수 있다.

② 건축 불공정 신고센터 센터장과 협회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건축사회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건축사회 윤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③ 건축 불공정 신고센터와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회원 등의 징계요청) ① 회원등이 다른 회원의 윤리규정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회장 또는 건축사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징계요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의 불법·부당 행위와 그 내용, 위반 규정 등을 기재한 징계요청서에 서명 날인한 후,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윤리규정 등을 위반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거나 징계 요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한 회원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징계 처분할 수 있다.

제8조(자료의 보완요구 및 사실조사 등) ① 회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징계요청 사항에 대하여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관계 입증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징계를 요청한 회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징계 요청서가 접수되거나 회원의 중대한 윤리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에게 해당 회원의 윤리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등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의 조사 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징계요청 및 조사 등

제9조(징계의 요청 및 시효) ① 회장은 윤리 위반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징계사건의 심의를 담당하는 윤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 요청은 해당 회원의 위반 행위와 위반 규정, 위반내용 등 징계혐의 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 요청은 위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징계의 심의 및 심의·결정기간) ① 위원장은 제9조에 의한 징계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하여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징계 요청권자에게 징계심의에 필요한 조사 및 보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윤리위원회 위원을 선정하여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대상자가 징계 요청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관계 기관에서 징계처분 또는 민·형사상 소송절차에 있을 때에는 그 사건이 확정 될 때까지 심의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제 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의한 징계의 심의·결정 기간은 회장이 소관 윤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징계를 요청한 날로부터 산정한다.

제11조(제척, 기피 및 회피) ① 윤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1. 당해 징계 심의대상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징계대상자와 친족인 경우
 2. 징계대상자와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징계 대상자의 업무에 관여한 경우
 3. 징계대상자의 건축사사무소 또는 징계대상자가 소속되었던 건축사사무소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징계대상자는 윤리위원회의 위원이 당해 징계사건과 관련하여 불공정한 심의 및 의결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疎明)하고 해당 위원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윤리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제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④ 윤리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당해 사건의 심의 개시 3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이하 “제척 등”이라 한다)된 경우에는 의결정족수 계산에 있어 당해 위원을 제외하고 재적위원을 산정한다. 다만, 해당 윤리위원회 정원의 1/3이상 제척 등이 된 경우, 회장은 당해 사건을 심의할 임시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⑥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제척 등이 된 경우에는 제14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임시 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12조(징계대상자의 출석·진술권 등) ① 윤리위원회는 징계 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징계대상자가 윤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에게 회의개최 7일 이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징계대상자는 윤리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징계심의 기일에 윤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는 본인의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을 선임하여 윤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징계 심의에 필요한 경우 당해 사건의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정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징계대상자가 윤리위원회의 출석·진술 요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이 진술을 하지 않거나, 조사에 불응한 경우에는 당해 징계사건에 대해 의

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징계대상자 또는 관계인은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윤리위원회에 허위로 진술하거나, 윤리위원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윤리위원회의 결정 및 징계처분 권한) ①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징계처분, 기각, 각하 등으로 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징계처분 : 징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내리는 결정
 2. 기각 : 징계 요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내리는 결정
 3. 각하 : 징계시효의 완성 또는 징계절차에 위배되는 징계요청에 대한 결정
- ② 정관 제5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의 종류별 각 윤리위원회의 징계 처분 권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윤리위원회 : 경고, 회원 권리정지, 제명, 건축사법에 의한 징계요청 결정
 2. 건축사회 윤리위원회 : 경고, 회원 권리정지,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요청
- ③ 정관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징계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건축사법에 의한 징계요청은 “[별표2]”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3장 윤리위원회 운영 등

제14조(위원 위촉 등) ① 중앙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건축사회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건축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건축사회 회장이 위촉한다.

② 정회원 중에서 선임하는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③ 중앙윤리위원회 외부전문가 위원은 관련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된 사람 중에서 협회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④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받은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중앙윤리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중앙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축사회의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을 때
2. 2개소 이상 건축사회 회원간 분쟁이 연계되어 있을 때
3. 관계기관의 징계요청이 있을 때
4.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
5. 정관 제50조 제1항 제3호의 회원 제명과 관련하여 건축사회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때

6.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건축사의 징계요청이 있을 때

7. 기타 회원의 윤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회 회장 또는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 제3호 및 제4호와 제6호의 경우 건축사회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거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건축사회윤리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건축사회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정회원의 요구가 있을 때

2. 건축사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건축사회 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

3. 관계기관의 징계요청이 있을 때

4. 협회 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5. 건축사회 소속 회원이 관여한 건축공사의 부실방지 또는 안전사고 점검결과 문제점이 확인되었을 때

6. 기타 회원의 윤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건축사회 윤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징계의 심의결과 위반 사실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정관 제50조 제1항 제3호 내지 건축사법에 따른 징계요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건축사회 회장에게 보고하여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간의 심의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건축사회 회장은 건축사회 윤리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징계심의 기관 변경을 요청한 경우 7일 이내에 협회 회장에게 징계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윤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14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다시 선임될 때까지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소집 및 결정) ① 윤리위원회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거나,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목적과 안건 등을 기재한 문서를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9조(총무위원) ① 윤리위원회는 총무위원 1인을 둔다.

② 총무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담당직원의 도움을 받아 윤리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20조(보선) ① 회장은 윤리위원회 재적위원의 5분의 1이상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위원을 보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선 절차는 제14조에 따른다.

제21조(결과보고) 위원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결정 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징계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수락여부의 결정) ① 회장은 제21조에 의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윤리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수락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윤리위원회의 결정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② 이사회는 수락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제1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을 위원장, 피징계자 및 건축사회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건축사회 회장은 건축사회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사항을 이사회에서 수락 결정한 때에는 그 징계처분 결과를 협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회장은 이사회가 윤리위원회의 결정사항 수락을 거부한 때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유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3조(재심청구)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징계결정서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사회 윤리위원회의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중앙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24조(재심의 절차 및 결정) ① 회장은 제22조 제5항에 따른 재심의 요청을 받거나 제23조에 의한 재심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소관 윤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의하여 재심의 요청된 사건의 재심청구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기각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의하여 재심의 요청된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7일 이내에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윤리위원회가 제1항에 의하여 재심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결정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결정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의한 재심요청 사건의 재심의 절차에 있어서는 제10조 규정에 따른다.

⑥ 제3항에 의하여 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한 이사회의 수락여부 결정

및 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22조에 따른다.

제25조(징계 발효) ① 징계 결정사항은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회장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통보함으로써 발효하며, 징계기간은 제23조에 의한 재심 청구 기일 경과 후 부터 산정하여야 한다.

② 피징계자가 재심을 청구하였을 경우에는 1심에서의 징계효력은 재심 확정 전까지 유보된다.

제26조(징계결과 보고 및 징계 요청) ① 협회 회장은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이사회가 수락 결정한 징계사항 중 정관 제50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징계를 한 때에는 재심청구 기한이 경과한 날 또는 재심결과 해당 징계가 최종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징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 회장은 제22조에 의하여 건축사법을 위반한 회원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징계 요청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3항에 따라 해당 회원의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27조(회의의 비공개 등) 윤리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윤리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28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7일 이내에 회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윤리위원회가 징계의 심의 및 의결에 관한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회의록 외에 속기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29조(문서의 송달) ① 윤리위원회가 문서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배달증명우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1회 이상 송달한 문서가 수신자의 수취거절,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에는 해당자가 협회에 신고한 전자우편 주소 또는 모사 전송(FAX)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이 경우 송달의 효력은 발송한 때에 발생한다.

③ 수신자의 소재지를 알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윤리위원회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다만, 공시송달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조치를 1회 이상 취한 후에 하여야 한다.

④ 공시송달은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하고 이 경우 홈페이지에 공고한 날의 다음날부터 7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30조(회의비용 등) 윤리위원회 및 조사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위원장 수당과 회의참석비, 교통비 등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세부사항) 정관 및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관 및 이 규정의 범위내에서 윤리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서기 196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서기 197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서기 197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기타) 본 규정중 건축사회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회장은 건축사회회장으로, 이사회는 간사회로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서기 1976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서기 1977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서기 197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서기 1978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서기 198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본 규정은 서기 1983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본 규정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부 칙

본 규정은 서기 1984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서기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서기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서기 199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서기 1999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서기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4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정관 인가일(2022.7.29.)부터 시행한다.

제2조(윤리위원회 구성 및 경과조치) 협회 회장과 건축사회 회장은 이 규정이 시행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규정에 의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윤리위원회는 새로운 윤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이 규정에 의한 윤리위원회로 본다.

제3조(징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 및 종류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윤리규정 승인일(2025.7.30.)부터 시행한다.

회원 징계 결정기준

I. 일반기준

1. 징계처분 대상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징계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징계처분 요구일 이전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는 경우 1개월 이상의 회원 권리정지 처분을 할 수 있으며, 2회 이상의 회원 권리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 처분한 징계 중 가장 높은 처분을 기준 하여 2분의 1범위내에서 가중 처분을 할 수 있다.
3.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공중에 미치는 피해의 규모,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징계처분 기준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 권리정지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징계처분요구일 현재 위반사항이 시정 완료되었거나 시정명령을 이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처분 기준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최근 3년 이내에 건축행정 및 건축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으로 광역자치 단체장 이상의 행정기관 표창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해당 징계처분 기준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 상기 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른 가중·감경기준은 처분 내용이 회원 권리정지 이상의 경우에 적용하되, 감경기준은 중복 적용할 수 없으며 사회적 가치나 통념과 공익에 반하는 중대한 위반행위 또는 위반행위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경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7. 협회의 회원 징계처분과 별개로 해당 회원의 징계사유가 건축사법 및 관계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법에 따른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8. 회원 권리정지 징계처분된 회원에 대하여는 해당 징계기간동안 정관 제9조에 따른 회원의 권리를 정지하고, 협회가 발행하는 간행물 보급을 중단하며, 위원 및 포상 등 추천과 조사검사업무대행 및 허가권자지정 감리 추천 등을 배제한다.
9. 회원이 정상적으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회비 납부를 거부하거나, 2년 이상 장기미납한 경우 위원회 결정으로 징계처분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II. 세부기준

위 반 내 용	징계처분 기준
1. 윤리규정 제15조 건축유산 보존, 제16조 환경에 대한 고려, 제19조 업무협력, 제25조 계속교육, 제28조 관리감독 책임, 제30조(상호존중 등) 제1호, 제2호, 제32조 제1호, 제3호 업무환경 개선, 제33조 공익신고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2. 윤리규정 제12조 인권, 건강, 안전, 복지의 추구, 제32조 제2호 업무환경 개선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회원권리정지 1개월 이하
3. 윤리규정 제6조 품위와 청렴, 제7조(이해충돌 방지 및 진실성)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17조 업무수행 태도, 제20조 진행사항 고지, 제22조 기록유지 및 보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회원권리정지 3개월 이하
4. 윤리규정 제4조 강요금지, 제8조 부당행위 거부, 제9조 허위 홍보 금지, 제18조 윤리규정에 어긋나는 계약수입 및 계약서 작성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회원권리정지 6개월이하
5. 윤리규정 제7조(이해충돌 방지 및 진실성) 제4호, 제10조 금품 및 이권수수 금지, 제21조 기밀유지, 제23조 법규 등 준수, 제26조 제2호(법시행령 제23조 위반) 제3호, 제4호, 제27조 지적재산보호, 제29조 공정한 설계공모, 제30조(상호존중 등) 제3호, 제31조 업무질서유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회원권리정지 12개월이하
6. 윤리규정 제26조 제1호 자격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명

- ※ 주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징계기준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2) 징계처분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여부 또는 공중에 미치는 피해의 규모,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 3) 협회의 회원 징계처분과 별개로 해당 회원의 징계사유가 건축사법 및 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법에 따른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별표 2]

건축사 징계 요청 기준

□ 건축사법 제30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 징계요청 기준

위 반 내 용	징계처분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건축사자격 등록취소
2.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 윤리선언을 위반한 경우	건축사 업무정지 3개월 이하
3. 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건축사 업무정지 12개월 이하
4.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실적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건축사 업무정지 6개월 이하
5.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사 업무정지 8개월 이하
6. 법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건축사 업무정지 6개월 이하
7. 법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건축사 업무정지 3개월 이하
8. 법 제23조제7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건축사 업무정지 8개월 이하
9. 법 제31조의4에 따른 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 제4조, 제8조, 제9조, 제18조를 위반한 경우 (강요금지) (부당행위거부) (허위홍보 금지) (계약서 작성)	건축사 업무정지 6개월 이하
- 제7조 제4호, 제10조, 제23조, 제26조 제2호 내지 제4호, 제27조, 제29조, 제31조를 위반한 경우(이해충돌 방지 및 진실성), (금품, 이권수수 금지), (법규 준수), (자격대여 금지), (지적 재산보호), (공정 설계공모), (업무질서 유지)	건축사 업무정지 12개월 이하
- 제26조 제1호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자격대여 금지)	건축사 자격취소
10. (법 제30조의3) 제2항제2호에 따른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	건축사자격 등록취소

※ 주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징계기준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징계처분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여부 또는 공중에 미치는 피해의 규모,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3) 5년간 10개월 이상의 건축사 업무정지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자격등록 취소를 요청하여야 함

(별지 제1호 서식)

징 계 요 청 서

징계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자격번호		사무소명	
	전화번호		팩스	
	주소			

위 반 사 항	위반규정	
	위반내용	
	위반일시	
	징계청구의 취지(이유) 및 입증내용	
	첨부 서류 및 물건의 목록	

위 회원은 별첨 증빙서류 내용과 같이 회원 윤리규정을 위반하였기에 윤리위원회규정 제9조에 의하여 징계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징계요청인
협회(또는 건축사회)명 :
성명 : (인)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또는 건축사회윤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출서류	1. 징계요청서 1부 2. 첨부 서류 각 1부(입증자료 등) 3. 정회원 증명서 1부
------	---

(별지 제2호 서식)

(중앙 또는 건축사회) 윤리위원회 위원	
☐ 기 피 ☐ 회 피	신 청 서
① 안전명 (또는 사건번호)	
② 징계심의 대상자 성명	
③ 기피대상 위원	징계심의 대상자가 기피하고자 하는 위원 성명 기재
④ 신청사유	
윤리위원회규정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 앙 윤 리 위 원 회 위원장 귀하 또는 건축사회윤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 필요시 입증서류 제출	

서 약 서	
성 명	
소 속	(직 위)
상기 본인은 대한건축사협회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중앙윤리위원회(○○ 건축사회 윤리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또는 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상기 윤리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양심과 신의로서 공명정대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2. 상기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 또는 개인의 목적에 이용 하거나, 동 심의·의결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3. 본인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이와 유사한 관계에 있었던 자 또는 본인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한다. 4. 상기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지 않는다. 20 . . . 위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 한 건 축 사 협 회 회 장 귀하 () 건 축 사 회 회 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징 계 결 정 서

피징계자	성명		생년월일	
	자격번호		사무소명	
	전화번호		팩스	
	주소			

징계처분	위반규정	
	위반내용	
	징계처분	

위와 같이 윤리위원회규정 13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결정한다.

년 월 일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 (인)
또는 건축사회윤리위원회 위원장 : (인)

○○○ 귀하

제출서류	1. 징계결정문 1부 2. 징계결정 회의록 및 속기록 각 1부
------	---------------------------------------

(별지 제5호 서식)

재심청구서

재심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자격번호		사무소명	
	전화번호		팩스	
	주소			

재심청구 대상 처분의 내용 (징계처분 및 이유)	
재심청구의 취지(이유) 및 입증내용 등	
첨부 서류 및 물건의 목록	

위 본인은 (중앙, 건축사회)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처분() 통보를 받았으나 상기와 같은 사유로 윤리위원회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중앙 윤리 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출서류	1. 재심청구서 1부 2. 첨부서류 각 1부(입증자료 등) 3. 기타
------	--